

있어서 고액의 조정을 지양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향후 추세가 손해배상이 포함된 조정신청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여하에 따라 현재 60% 수준인 피해구제율의 진폭이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4. 결 론

언론중재제도의 출발은 언론의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민주화 사회가 된 현재는 언론 소비자를 위해서 신속하고 즉효적인 결론을 내리는 제도로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게 되었다. 우리가 문화산업에서 한류를 운위(云謂)하고 있는 것은 한국 문화예술과 관련된 콘텐츠의 다양성과 확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언론중재제도 역시 외국에 확산될 수 있는, 언론소비자를 위한 '한류'가 되느냐 마느냐는 결국 활발한 운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끊임없이 수정해가야 하겠지만 성공의 지름길은 다양한 사례의 분석과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이용도와 피해구제율 증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러 분석에서 보았듯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재판 결과와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재 및 조정과정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수준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언론이 자유로운 보도에서 위축된다면 이 또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위축은 곧 소비자의 피해로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언론중재제도는 여러 가지 긍정적 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피해구제율의 증가이다. 초창기 피해구제율이 40%대였던 것과 비교하여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반론보도 청구에서 조정성립률은 평균 39.3%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율(형식적으로는 취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합의에 따른 취하의 경우

를 포함한 것임)은 평균 68.6%에 달하고 있으며, 정정보도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조정성립률 31.2%, 피해구제율 59.8%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상당수의 사건이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중재위원회의 조정이 평면적 위치에서 자연스러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중재위원들이 법조 언론 학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조정의 성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조정전치의 범위를 좀더 넓혀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¹¹⁾

둘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구제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2년간의 통계이긴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해마다 거의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현대인의 특성과 함께 언론중재제도를 신뢰하는 정도가 높아진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언론소비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보완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 언론중재제도가 보완해 나갈 과제도 없지 않다.

첫째, 언론피해구제를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억울한 기분에서 울컥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상당수가 쉽게 취하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무의미한 취하로 신청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중재제도마저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배상액이 높은 재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언론도 손해배상액이 높아지는 것을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위협적인 존재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제도를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언론사도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이 높아져 언론자유가 위축되었다고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사내 고충처리인의 배치와 적절한 활용을 통해 사전에 손해배상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고충처리인-언론중재위 협

11) 양삼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25권 1호(2005년 봄호) p.10.

의 등을 통해 그 보도의 선에 합법성을 강화한다면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는 제한없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사도 관행적 권위의 등 뒤에 안주하려는 자세를 버리는 한편 언론소비자의 인격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취재 및 보도방법을 개발하여 언론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는 것도 오늘날 언론의 과제 중 하나라고 본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된 문제점을 보면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 타인의 개인적 정보를 지나치게 추가하려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피해구제의 매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일이다.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인터넷신문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포털과 블로그 또한 언론피해를 가져오는 매체 중 하나이나 이의 포함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는 형편이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이고, 스피드 사회이다. 정보는 급속도로 이동하는데 침해를 방지하는 법과 제도는 거북이걸음을 한다면 그 의미가 없을 것이다.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거나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갈등은 고래로부터 있어 왔고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다양해진 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할 환경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환경을 발전의 속도에 제동을 걸지 않고 법과 제도로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는데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격체, 조직이 함께 참여하고 동의하는데서 가능해지리라고 믿는다. 그 존재는 바로 언론소비자, 언론공급자, 조정자들이기 때문이다. □